

#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72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8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8. 5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8. 17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제안이유

-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, 지급정지 기준을 조정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2조)
- 나. 장학금의 지급정지기준중 이장직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정지기준 추가함(안 제8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,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, 장학금지급정지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

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,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

- 장학금지급의 정지기준중 이장직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정지사유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코자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본 개정조례안이 지난 7.14 제116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시 심사한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내용이 거의 같은데 그때당시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여 조례안을 따로 개정하게된 사유는?
- 답 :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 제116회 제1차 정례회시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 개정코자 하였으나 절차상 입법예고를 누락하여 동시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.
- 문 : 2004년도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인원과 지원예산 금액은 얼마인가?
- 답 : 2004년 1학기(상반기) 6명에게 3,23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8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